

수혜자격 심의 통지서
Notification of Eligibility Review

수혜자/의뢰인 이름 및 주소

수혜자/의뢰인 대리인의 이름 및 주소

제목: _____에 대한 수혜자격 심의 통지서

귀하는 현재 _____에 따라 발달장애부(DDA)의 서비스 수혜 자격이 됩니다. DDA 수혜자격 규정은 여러 시기에 수혜자의 수혜자격을 심의하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강 상태들 중 하나에 따라 WAC 제388-823장에 의거해 DDA 수혜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추가 정보가 필요합니다: 지적장애, 뇌성(소아)마비, 간질, 자폐증, 기타 신경성 장애 또는 지적장애와 유사한 기타 상태. 자세한 정보는 필수 증거자료 차트(Required Documentation Table)를 참조하십시오.

DDA에서 이 수혜자격 재판정에 필요한 해당 정보를 보내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DDA에서 이 정보를 보내주기를 원하시면 다음을 수행해 주십시오:

- 동봉한 동의서에 서명함
- 본 동의서에 해당 정보를 보낼 곳을 표명함
- 주소가 적힌 동봉 봉투에 넣어 DDA로 제출함

받고 있는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_____까지 가능한 빨리 보내주십시오. 이 날짜까지 연락을 하지 않으면 당국이 보관하고 있는 귀하의 파일 정보에 근거해 귀하의 서비스 수혜자격을 결정할 것입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십시오: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요청할 경우 수혜자격에 관한 주정부 규정(WAC 388-823) 사본을 제공해 드립니다. 또는 아래 웹사이트를 방문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dshs.wa.gov/dda/consumers-and-families/eligibility>.

동봉자료: 제출해야 할 증거자료 차트(Required Documentation Table)
동의서 (DSHS 14-012)

사본: 수혜자(의뢰인) 파일

제출해야 할 증거자료 차트(Required Documentation Table)

장애 상태	진단	진단한 의료진	기타 기록
지적 장애	지적 장애 (옛 명칭은 정신 박약)	유면허 심리학자, 워싱턴 공인 학교 심리학자 또는 전국학교심리학자협회로부터 인증받은 기타 학교 심리학자	2회 이상의 평균이하 표준편차를 기록한 폴스케일 IQ 점수를 포함한 전체 심리학 보고서, 2회 이상의 평균이하 표준편차를 기록한 적응성 기술 검사 점수.
뇌성(소아)마비	뇌성(소아)마비 사지마비(전신마비) 반신불수 양측마비	유면허 의사	3세 이전에 발병, 두 가지 이상의 영역 (배변, 목욕, 식사, 옷 입기, 이동, 또는 의사소통)에서 매일 직접적인 신체적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뒷받침하는 정보.
간질	간질 또는 경련성 질환	신경과 전문의	병력과 신경 검사에 기초한 진단, 발작이 통제되지 않으며 진행 중이거나 재발하고 있음을 일반의사나 신경과 의사가 확인함, 적응성 기술 검사에서 2회 이상의 평균이하 표준편차를 기록하며 적응성 기능에 실질적 제한성이 있음이 증명됨.
자폐증 (DSM-IV 준수)	자폐증 또는 자폐 장애 DSM-IV-TR의 299.00 준수	유면허 심리학자, 자폐증 또는 발달장애 센터와 관련된 전문공인등록개업간호사(ARNP) 또는 다음과 같은 전문의: 신경과 의사, 정신과 의사, 또는 발달행동 소아과 의사	DSM-IV에 의거한 전체 평가에서 모든 진단 기준에 부합됨, 사회성 기술, 언어, 의사소통 기술 또는 상징 놀이나 상상 놀이에서 3세 이전에 발달지연이나 기능 이상의 증거가 나타남, 적응성 기술 검사에서 2회 이상의 평균이하 표준편차를 기록하며 적응성 기능에 실질적 제한성이 있음이 증명됨.
자폐 스펙트럼 장애 (DSM-V 준수)	자폐 스펙트럼 장애 299.00 두 열의 심각도 수준 2 또는 3을 포함한 DSM-5 준수	유면허 심리학자, 자폐증 또는 발달장애 센터와 관련된 전문공인등록개업간호사(ARNP) 또는 다음과 같은 전문의: 신경과 의사, 정신과 의사, 또는 발달행동 소아과 의사	DSM-V에 의거한 전체 평가에서 모든 진단 기준에 부합됨, 사회성 기술, 언어, 의사소통 기술 또는 상징 놀이나 상상 놀이에서 3세 이전에 발달지연이나 기능 이상의 증거가 나타남, 적응성 기술 검사에서 2회 이상의 평균이하 표준편차를 기록하며 적응성 기능에 실질적 제한성이 있음이 증명됨, 1 이상의 평균이하 표준편차의 FSIQ - 또는 - DSM-IV에 의거해 자폐성 장애 299.00의 모든 기준에 부합됨.
기타 신경성 장애 또는 지적 장애와 유사한 기타 상태	지적 능력과 적응성 기술 결함의 원인으로 알려진 신경 장애 또는 염색체 장애	유면허 의사	1.5 이상의 평균이하 표준편차의 폴스케일 IQ 점수, 적응성 기술 검사에서 2 이상의 평균이하 표준편차를 기록하며 적응성 기능에 실질적 제한성이 있음이 증명됨.

주: 이 양식은 일반적인 안내서 역할만 할 뿐이고 DDA는 추가 정보나 평가를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본 문서는 서비스 수혜자격 결정에 첫 단계로 필요합니다. DDA 수혜자격은 WAC Chapter 388-823에 의거해 결정됩니다.